2025년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2025. 8.

인천광역시중구

법무감사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5. 6. 23.(월) ~ 6. 27.(금) (5일간)

○ **감사범위** : 2022. 1월 ~ 2024. 12월 추진업무 전반

○ **감 사 반** : 4명

○ **중점감사 사항**

- 지방보조금 집행사항의 적정 여부
- 회계처리 기준 준수여부
- 인건비 등 운영 관련 규정 준수여부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여부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건)				재정상(건/천원)					신분상 (건/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	회수	추급	환급	
8	2	5	1	5/948	-	5/948	-	-	-

※ 주의·시정 등 중복으로 인해 건수 불일치

[일련번호 : 1]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채용 전 결격사유 조회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의「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제5조(채용 결격사유)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고, 채용 이후 그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
3. 타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재직 시 부패행위,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타 인사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채용 전 결격사유 미실시 현황 : 생략

체육회에서는 감사 수감 기간 동안 [표 1]과 같이 채용 대상자 2명에 대해 채용 전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누락한 채 채용을 진행하였고, 채용일 이후 징계사실유무 등 결격사유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장은

【 주　　의 】

○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후 채용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인천광역시 중구

개 선 요 구

[제 목] 대체휴무 사용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인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인사 규정」 제28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2항에 따르면, 체육회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전항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속 직원의 시간외 근무 일부에 대하여 대체휴무로 사용하며 운영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시간외 근무 내역 대체휴무 사용 지적사항 현황 : 생략

체육회에서는 대체휴무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표 1]과 같이 대체휴무 발생 사유의 적정성이나 사용 시기의 타당성 등을 판단할 수 없는 사례가 확인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장은

【 개　　선 】

○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인사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시간외 근무를 대체휴무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결산절차 준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정관」 및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회계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정관」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3항에 따르면,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회계규정」 제27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제2항에 따르면 작성된 결산서는 감사의 감사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인천광역시 중구에 보고하는 일련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결산 절차 미이행 관련 처리 현황 : 생략

체육회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된 결산서를 감사의 감사 후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표 1]과 같이 ****년도 결산서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으며, 총회의 승인 이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에 결산서를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장은

【 주　　의 】

○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회계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결산 등 회계 업무 처리 시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미준수

[기 관 명] 홍보체육실,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우수한 체육인 양성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중구(홍보체육실)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목적)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제6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 자기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지방보조사업 자기부담비율 : 사업금액별 차등 비율 적용
(2019. 5. 20.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총 사업비 20,000천원 이상 : 30%
- 총 사업비 20,000천원 미만 : 20%
- 총 사업비 10,000천원 미만 : 10%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비율 미준수 현황 : 생략

체육회에서는 [표 1]과 같이 20**년도에는 지방보조사업 자기부담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20**년도에는 정산 시 자기부담금 비율이 보조금 신청 당시의 집행액(계획) 비율과 상이함에도 홍보체육실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표 2] 지방보조사업의 기준금액 미준수 현황 : 생략

체육회에서는 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워크숍 행사를 개최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계획 및 집행하였으며, 홍보체육실에서는 보조금 신청과 정산 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홍보체육실장은

【 주　　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장은

【 주　　의 】

○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확보 후 보조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고, 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비율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집행지침」제7조(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지역 제한)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23시 이후 사용·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 사용을 제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지역제한) 제2항·제3항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제한된 시간·지역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 생략

그러나, 체육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및 소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표 1]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공휴일 및 휴무일에 부적정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그중 3건(총 611,000원)은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장은

【 시 정 】

○ 부적정 집행된 업무추진비(총 3건 / 611,000원)에 대하여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요 구

[제 목] 체크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따르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보유카드 및 발생포인트 현황 : 생략

그러나, 체육회에서는 202*년 *월부터 202*년 *월 사이 발생한 **개의 ◎ 체크카드 포인트 23,024원과 202*년 *월부터 202*년 *월 사이 발생한 **개의 ■ 체크카드 포인트 314,123원을 현재까지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장은

【 시　　정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조치되지 않은 카드 포인트(총 337,147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